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11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5. 5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

가. 본 조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989. 6. 19. 제정 (조례 제1276호) · 시행하여 왔으나,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1990. 1. 13.제정),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-舊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1990. 1. 13.제정),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(2008. 6. 5. 제정)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다. 세부사항은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(국토교통부, 환경부)」 과 「산업단지 관리지침 (산업통상자원부)」 에 따르게 되어 있어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(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- (3)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성별/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5. 3. 30. ~ 4. 20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